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67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박균택 · 김주영 · 박상혁
박지원 · 한민수 · 양부남
서영교 · 김동아 · 장경태
이건태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

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

제21조의7제3항 중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로 한다.

제21조의8 중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를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의3, 제15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를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제6호 또는 제7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의 부과·추가·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3항 및 제21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의3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작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u>「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u> <u>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u> <u>을 금지하고, 그 이행여부 확</u> <u>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u> <u>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u>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 ② (생 략)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③ ----- ----- -----

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 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39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
-----.

제21조의8(준용규정) -----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4조의3, 제15조-----

-----.

제39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 제2호의2 · 제5호 · 제6호 또는 제7호-----

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